

2001년 수질정책 추진방향



정연만
환경부 수질정책과장

I. 국가적 과제로서의 물문제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인간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국민생활과 생산활동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본재인 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여년간 정부는 수자원의 양적 확대에 주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물의 수요는 수자원 개발에 의한 공급 확대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댐 건설 적지의 부족,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로 수자원 개발은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 개발 후 보전”의 개발정책으로 물의 질관리는 소홀히 해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상수원 직상류지역에도 광범위한 개발이 허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환경기초시설부문에의 투자도 다른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에 비하여 저조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연중 강수량이 하절기에 3분의 2가 집중되어 하천수량이 줄어드는 갈수기에는 적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어도 강물이 크게 오염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전국의 주요하천은 물론 농어촌의 실개천까지도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낙동강 폐놀오염 등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중요한 뜻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소득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발우위의 논리가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어 물관리 여건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 관리정책을 들러싼 사회적 관심은 과거에도 그

러하였거니와 특히 최근에는 팔당호대책수립과정에서의 상류지역 주민의 반발, 시화호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보전문제, 위천공단개발과 낙동강수질보호라는 명제가 충돌하고 있는 낙동강 상하류지역간의 갈등, 용담댐 물배분과 관련한 충청권과 전북권의 이견 등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물의 오염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중차대한 국가적, 국민적 잇슈로 부각되고 있다.

종래 상하류간 양적선점을 두고 벌어졌던 물꼬싸움이 이제는 수질오염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에 관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 물관리 정책도 수자원의 개발과 배분문제와 함께 수질보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환경부는 금년에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광역 물관리체계 구축과 상수원 수질개선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오염원 관리의 선진화·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5개 분야의 역점추진시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금년에 추진할 역점과제를 소개함과 아울러 향후 수질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II. 2001 수질보전정책 역점추진과제

1.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지난 ‘98년 11월 20일 “한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한 이래 ‘99년 12월 30일에는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2000년 10월 24일에는 “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과 “금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대책들에 담겨져 있는 획기적인 수질개선대책들에 대한 입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수계별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 대책의 핵심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업무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4대강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코자 한다.

한강특별법은 이미 제정되어 ‘9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낙동강특별법은 2000년 6월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으며, 금강특별법과 영산강특별법은 금번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코자 정부내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특히 상·하류간 갈등으로 인해 지역공청회 등 대책수립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낙동강특별법의 경우 국회에서도 상·하류 지역간 입장차이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수계별 종합대책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수질개선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용수목적, 보전생태계 등에 맞는 목표수질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하천수계의 배수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수질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고 있으며, 선진국중 미국, 일본은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독일같은 경우는 직접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오염총량관리의 원리에 의하여 폐수 배출을 허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 배경으로는 ①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 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 ②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

한 규제가 되는 비합리적인 제도라는 점, ③ 우리나라 하천의 중·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현재의 농도규제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있어서도 수계별 특성을 감안,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한강의 경우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임의제인 관계로 시·군에서는 동제도 도입을 기회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처리시설 등의 인허가와 총량제의 시행을 철저하게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도입을 유도하고 있고, 그 결과 광주, 양평, 남양주, 용인 등 4개 시·군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수계별 특별법에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과 기본방침을 수립하며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셋째, 상수원지역 오염예방대책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먼저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른 상수원지역의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금년중으로 수변구역 지정예정지 조사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정부·지자체·전문가·주민대표가 현지를 합동조사하여 지정대상 토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지정고시를 추진코자 한다.

그리고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이 일부 잘못 지정되었다는 지적이 “금강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과정에서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 불합리한 지정이 확인되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2000년 6월에 수립한 “낙동강수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책”에 의거, 지역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수질 유해물질입지 제한지역 및 제한시설을 금년 하반기중 지정·고시코자 한다.

넷째, 유역중심의 상·하류 공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의 제정상황에 맞추어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부과대상지역·지원지역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계내 주요 물관리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며, 낙동강·금강·영산강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고 환경감시대를 정규조직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과학적인 오염원조사와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오염원 자료의 실시간 자동경신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00.11~'02.12)에 수질오염원조사체계를 반영하고, 오염총량관리의 이행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낙동강수계부터 우선 구축하고 연차적으로 4대강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섯째, 유역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자 한다.

4대강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년 1회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함으로써 미진한 사항은 독려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한다.

2. 하천 및 호수 수질관리 강화

최근에 들어 호수의 수질오염이 문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기에 금년에는 호수관리강화와 하천생태계 복원 등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코자 한다.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연안 인공담수호의 수질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해수호로 변경결정된 시화호에 대한 수질보전변경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재 정부에서 결정중에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부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추진하며, 농업용수원으로 축조되는 화옹호에 대하여는 수질개선대책을 금년 상반기중 확정하여 경기도 등 관계기관별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물배분문제와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용답댐 담수와 용수배분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수질개선대책이 수립·확정된 이후에 담수시기를 결정하고, 용수배분문제는 금강특별법이 제정되어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둘째, 호수 수질관리의 효율화와 녹조방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육수학회의 호수 환경조사기법 개발연구결과를 활용, 호수 환경조사 지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근거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호수의 부영양화 억제를 위해 하천·호수의 수역내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설치·운영, 수초재배섬 운영, 가압부상식 녹조방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내실화하고 수질측정망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위해 콘크리트 옹벽타설 등 종래의 환경파괴적 행태를 버리고 물고기 서식처가 보존되는 사업이 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양여금 지원율도 인상할 계획이다. 녹조방지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추진결과를 일제 점검·평가하여 향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표준화 내지 정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한계수계에 추가로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확대(2개소)하여 상수원 등에 대한 24시간 연속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 대하여는 설치 확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오염원 관리정책의 효율성 제고

오염원 입지제한과 더불어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오염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는 배출원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강구되어질 때 제대로 관리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오염원별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코자 한다.

첫째; 오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생활계 오염을 감축해 나가고자 한다.

광역상수원 및 지방상수원지역의 비시가화지역중 오수처리가 시급한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우선하여 집중 지정하며, 2002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함과 아울러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SOFA 개정으로 투명해질 주한 미군부대 보다 아국 군부대 오수처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처리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정관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배출원단위 산정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수 배출원단위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분뇨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분뇨처리시설 18개소를 확충하고, 질소·인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해 분뇨의 고도처리와 적정처리를 도모하며, 최근 3년간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정운영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10년이상 노후시설 32개소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기술진단과 시설개선을 추진하며, 11개소에 대하여는 민영화 운영방안을 추진하고, 다원적으로 관리되어 온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폐수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21C 중·장기 산업폐수 관리정책 및 산업분야별 폐수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오염도 저감시키는 차원에서 산업폐수 줄이기 시범사업(24개업소), 하·폐수종말처리구역내 별도 배출허용기준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산업단지 11개소, 농공단지 5개소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완공하는 등 27개소의 신·증설을 추진하며, 부설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의 기술진단과 시설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배출부과금을 통합·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부과금 징수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정

수율제고 방안을 강구하며 기술발전과 수질목표를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기준 강화를 위해 ‘99년 신규 지정된 5종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노말헥산 배출허용기준 및 공정시험방법의 합리적 개정,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가능한 폐놀류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방류수질기준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령에 의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입지제한 필요성이 큰 낙동강·임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과 설치제한 시설을 금년 하반기까지 확대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셋째, 축산폐수 공공처리기능을 확대하고 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개소를 신설하고, 9개소는 계속 추진하며, 6개소에 대하여는 질소·인 처리시설 설치 등 시설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운영중인 10개소 내외의 시설을 선정, 공법별 운영·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처리율과 연계한 운영비 차등지원,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비점오염원에 대하여는 선진외국에서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먼저 금년에는 팔당상수원에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시설 시범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코자 한다.

4.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체계 강화

“열 순경 하나 도둑 못 잡는다”는 말처럼 오염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에 어려움이 있으나, 감시에 의한 예방이 비용이나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감시·예방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코자 한다.

첫째,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오염사고 취약시설은 특별관리하고, 20개 상수원 주변도로에 대하여는 수송차량 통행을 제한하며, 수질사고에 신속히 대응·처리하기 위해 갈수기 기간 중 환경부에 “종합상황실”, 시·도 및 환경관리청에 “지역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하고, 시·도별로 반기 1회이상 오염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수질오염원 감시·단속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환경친화기업 등 환경관리 우수업체는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상습 위반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하는 등 폐수배출업체별로 차등관리하며, 한강의 경우와 같이 낙동강·금강·영산강 환경감시대를 정규 조직화하고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단속반을 확대 개편함과 아울러 환경사법경찰관리에 의한 환경사법 수사를 확대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2001년, 3억원 확보)하는 등 환경오염신고의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5. 대국민 홍보 및 교육강화

위에서 살펴 본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바, 금년 한해에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비용만 해도 2조8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언론이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고서는 소기의 정책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질보전 홍보와 민간감시활동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와 감시를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III. 수질보전정책의 양후 추진방향

물은 우리 생명의 원천이자 첨단기술의 미래 산업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료이기도 하다. 깨끗한 물을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삶과 나라 경제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의 세기라 불리우는 21C 새 천년을 열어감에 있어 맑고 깨끗한 물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간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여 4대강별로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오고 있는 바, 향후 동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해 나가야 하겠으며 이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도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오염원입지제한 등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량의 오·폐수 배출원의 입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수질환경관련법 체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토관련법 체계내에서 보전지역 토지에 대한 보전용도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수질관리를 위해 보완적인 시행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수질환경관련법제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국토이용법제에서 개발가능지로 분류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발희망을 심어준 후에 수질환경관련법제에서 행위규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현행 체제로는 지역주민의 불만과 저항만 증폭시킬 뿐이며, 난개발방지와 수질오염방지도 힘들 것으로 본다.

둘째, 오염총량관리제의 확립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농도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선진 외국에 비해 수계여건이 오염총량관리를 하는데 불리한 편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단계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보안·발전시켜 국제적으로도 오염총량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물수요관리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물수요관리는 예견되는 물부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수질관리의 요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관리를 위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시에는 의무사항을 법제화하되, 가

능한 정책 동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물관리 기본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오염자 비용부담원칙과 사용자 비용부담원칙의 보완·발전으로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하고, 상·하류간의 공영의 정신에 입각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리권 분쟁 등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물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유역단위의 물관리 조직을 개편해 나가되 점진적으로 수량·수질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규제수단을 다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규제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지역별·용도별 차등규제가 다변화되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관리하지 못하였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맷는 말

맑은 물 공급은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절실한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에서는 오는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상수원을 2급수이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아래로 범정부차원의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전국 하천의 62%를 I 급수로, 25%는 II 급수 수준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상수원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하천에 대하여도 적어도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질은 유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호소의 경우 팔당, 대청호 등 40개 주요호소를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중 33개소는 I 급수로 개선하고, 나머지 호소는 II~III급수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기조는 종래의 값싼 물의 충분한 공급이라는 정책에서 다소 비싸더라도 질 좋은 물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물수요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물 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 만큼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결코 소홀히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환경을 소홀히 할 경우 환경대란이 올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 환경부에서는 금년부터 “환경을 살리는 경제정책”, “경제를 살리는 환경정책”이라는 ECO-II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중에 있는 바, 수질정책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되 본래의 물을 살리기 위한 수질정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가 맑은 물을 되찾고 지키는 정책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는 지역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1998년도에는 한강수계수질관리특별대책, 1999년도에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그리고 2000년도에는 금강·영산강물관리종합대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많았지만 “맑은 물”이라는 대명제 앞에 상 하류간에 또 본류와 지류간에 한발씩 양보하여 정부합동대책을 수립한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4대강대책 추진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마무리되고, 이에 근거하여 차질없이 대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環境保全

필자약력

- 서울대 졸(행정학 석사)
- 미국 위스콘신대 졸(공공정책학박사)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졸(법학박사)
- '83~'88 : 총무처, 국토통일원 근무
- '88~현재 :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 근무
(법무담당관, 대기관리과장, 환경평가과장, 국토환경보전과장, 수질정책과장, 국무총리실 과장
근무)